

# 임가공물품의 보험목적성

이 순 관 <보험감독원 조정역>

### 1. 사고의 개요

1989년 2월 11일, 신청인 D와 피신청인 H사이에 보험목적은 원피의 원·부자재와 제품, 가공을 위한 약품 등으로 하고, 보험목적의 소재지는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고모리, 보험금액 3억원, 보험기간은 1989년 2월 11일부터 1990년 2월 11일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산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1989년 5월 29일, 위 보험목적물이 소재하는 신청인 D의 생산2부 가건 물작업장내 천정에서 화재가 발생(발화원인은 전기합선으로 추정)하여 신청인 D소유의 원·부자재 및 원·반제품이 소손되고, K주식회사등 타회사소유의 하청작업물량인 반제품·완제품 등이 소손된 사고와 관련, 피신청인 H가 J손해사정(주)에 손해사정을 의뢰하며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산정한 바 있는데, 신청인이 위 보험가액 및 손해액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타회에서 임가공의뢰한 동산의 보험목적 포함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 분쟁에 이르게 되었다.

###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본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2억4천6백만원, 보험가액은 4억4천2백만원, 보험금은 1억6천7백만원이 되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보험금 3천만원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했다. 아울러 본건



보험은 신청인 소유의 원·부자재와 제품, 가공을 위한 약품을 보험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타회사소유 동산은 보험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소유 동산에 대하여만 손해사정을 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타회사소유 동산까지 보험목적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산정한 것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것이기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피신청인은 본건 손해사정을 한 J손해사정(주)가 원부자재수 불부, 제품출납장부 및 작업일지 등을 기초로 하고 실사된 물량을 토대로 보험가액 6억5천6백만원, 손해액 7천1백만원을 산정하였으며, 피신청인이 동 산정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3천6백만원(신청인 3천만원, 타회사 6백만원)을 산정한 것과 아울러 본건 보험계약은 철근조스레트 본건물 2동 및 가건물 2동내에 수용하는

동산일체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이는 현행 원하청관계에 있어 다수의 원청업자로부터 임가공의뢰받은 하청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동산전부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서 타회사 소유의 동산을 보험목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3. 심의

본건을 심의한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보아 본건을 각하처리하였다.

「…우선 타회사소유 동산의 보험 목적 포함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임가공하청업자는 타인으로부터 임가공의뢰를 받은 동산에 대하여 이를 점유관리하면서 이를 재단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비록 소유권은 없다 하더라도 임가공의뢰를 받은 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청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특별히 의뢰받은 동산은 보험목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임가공의뢰받은 동산도 보험목적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신청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가공의뢰받은 동산은 보험목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신청인이 의뢰받은 동산도 본건 보험목적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산보험가액 및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중략…… 일용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4. 맷는 글

본건과 같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 즉 비례보상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타회사의 동산을 보험목적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는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다. 즉 본건에 있어서 타회사소유의 동산을 보험목적에 포함시키면 보험가액의 증가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감소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보험목적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면 보험가액의 감소로 인하여 보험금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임가공의뢰 물건의 보험목적성 여부에 대하여는 청약서나 보험증권에 이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는 한 분쟁의 여지가 있다.

현실적으로도 이를 명백히 하지 않음으로써 적지 않은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보험사고 발생시 상황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각자 유리하게 보험목적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킴으로써 보상처리를 무원칙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청약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타인소유 물건의 보험목적 포함여부가 나타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의 진의 및 사실관계 파악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타인소유의 물건을 보험목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동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용 타인소유의 물건은 보험목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가령, 창고업자가 보관중인 물건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타인이 임차하는 물건은 제외하고 자기소유 물건만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처럼,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타회사로부터의 임가공의뢰 물건에 대해 심의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가공업자는 점유·관리 및 재단을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임가공의뢰물은 보험목적에서 제외한다는 구두 또는 서면상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보험목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가공업체의 경우 자기물건과 타인물건이 혼재된 상태에서 화재로 인하여 동물건들이 함께 소실되었을 때, 자기물건만 보험에 들었다고 할 경우에는 자기물건과 타인물건을 구분(Separation) 하는 손해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반면, 타인소유 물건도 보험목적에 포함된다고 보면 전체손해액 산정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손해사정 측면에서의 현실적 실익을 감안하더라도 보험목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다만 자기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는 화재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 등 재물보험에 가입하되, 타인소유 물건에 대하여는 타인의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있기 때문에 타인소유물건에 대하여는 동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피보험자가 관리(Care), 보관(Custody) 재배(Control)하는 타인재물에 대하여는 배상책임보험에 있어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 면책 조항을 삭제하거나 특약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 오히려 동 방법이 보험 원리에 합치되는 점도 있을 것이다.

